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침

1. 개정이유

자동차대여사업은 구분별한 영업행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한 후 타 영업소에 반납할 경우 반납된 자동차는 타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고 최초 대여장소로 이동한 후에 영업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소비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복귀 탁송료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 등 소비자의 이용불편 및 요금 부담 등이 초래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 영업(일회성 회차 영업)을 허용하여 이용자 요금 인하 및 이용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한 경우 15일 이내 최초 대여장소로의 편도영업을 허용(안 제6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(2023. 3. ~ 4.)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3항 중 “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를 “영업(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게 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)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편도로 이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64조(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영업 (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게 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22